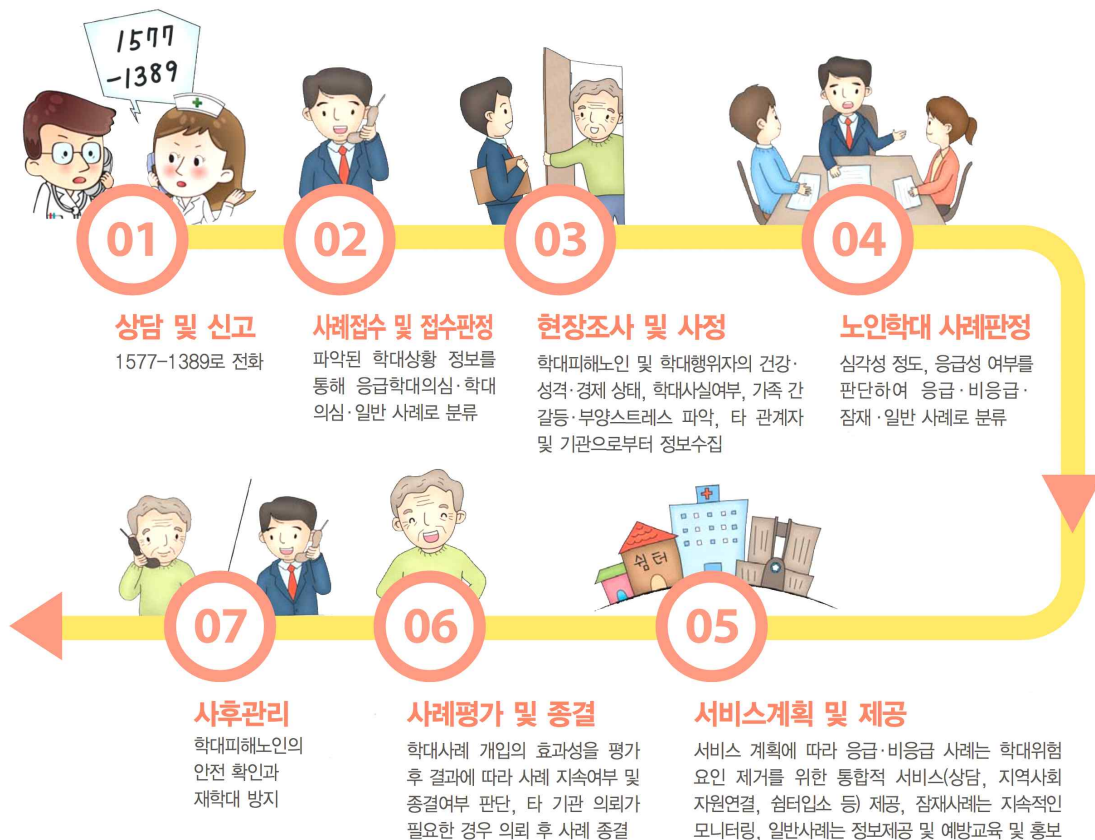

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안내
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.

-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-1389를 통한 접수
-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,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직접내방, 가정방문,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
- 서신에 의한 접수
- 보건복지콜센터(129)에 의한 접수
- 수사기관(112)에 의한 접수

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

신고자

-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-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.
- 신고자의 권리 :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한다.

신고의무자

- [의료법 제3조제1항](#)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
- [노인복지법 제27조의2](#)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, [제31조](#)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[제7조](#)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
- [장애인복지법 제58조](#)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, 치료,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- [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](#)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[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](#)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[제34조](#)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[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](#)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[제32조](#)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[119구조,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](#)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- [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](#)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[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](#)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[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](#)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[제12조](#)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[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](#)에 따른 응급구조사
- [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 제1호](#)에 따른 의료기사
- [「국민건강보험법」](#)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- [「지역보건법」 제2조](#)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
- [노인복지법 제31조](#)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
신고의무 및 과태료

노인학대 신고의무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)

-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
과태료(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)

-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
일시보호쉼터

- 강원도 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일시보호서비스
- 이용대상 :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학대행위자 이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대상자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공서비스 :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의식주 제공 서비스,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, 건강증진 및 위생관리 서비스,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